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골프장 취득세 중과 대상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과 대상 확대
<input type="radio"/> 회원제 골프장 신·증설 후 등록하는 경우* *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	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
<input type="radio"/> (신 설)	<input type="radio"/>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

□ 개정내용

- 다른 사치성 재산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
골프장 취득세 중과대상	회원제 골프장 신·증설 후 등록하는 경우* *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	(추가)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지방세법 부칙 제4조(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